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Ⅰ. 규제지역 지정 배경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급진전되었다. 그러나 그 여파로 1980년대까지는 공업도시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하지만 저황유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등 각종 저감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종전에 문제가 되었던 아황산가스, 먼지 등의 오염도는 개선추세로 전환된 반면, 흔히 선진국형 공해로 인식되는 오존, 시정장애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도시 대기오염 양상변화는 종전에 주요 배출원이었던 산업체와 같은 점오염원은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화 심화, 자동차 보급 및 화학물질 사용증가로 인하여 면오염원과 이동오염원(자동차, 철도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산업체 위주의 규제만으로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려우며, 오존의 경우 2차 오염물질인 관계로 같은 양이 배출되더라도 기상 및 지형여건에 따라 오염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대기오염 영향권역별로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기술개발 시행으로 효율적인 지역대기질 관리를 시행하여 복잡 다양화하는 대기오염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기보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Ⅱ. 규제지역 지정근거

1995년 12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8조의3)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항에 의거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를 초과하는 측정지점인 전체의 30%이상일 경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만 지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오염도가 개선되고 있어 향후 지정기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기준 연평균 오염도 >

구 분	아황산가스 (SO2, ppm)	이산화질소 (NO2, ppm)	오존 (O3, ppm)	총먼지 (TSP,㎍/㎥)	미세먼지 (PM-10,㎍/㎥)
지정기준	0.024	0.04	0.08	120	64
환경기준	0.03	0.05	0.10	150	80

Ⅲ. 대기환경규제지역 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대기환경규제지역)규정에 의거 1997년 7월에 지역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시(수원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광명시·하남시)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1999년 12월에는 현재 추진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는 단기간내에 이산화질소와 오존오염도 개선이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되는 부산(김해포함), 대구 및 광양만권역(여수, 광양, 순천, 하동화력발전소)을 해당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하였다.

한편 1997년 7월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서울 등 3개 시·도는 환경부에서 작성·배포한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지형·기상·인구·토지·교통·대기질 등 각종 환경현황,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오염 예측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염도, 향후 대기질 개선목표 및 오염원별 오염물질 삭감목표량, 오염저감방안 및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동 실천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3개 시·도에서 작성 제출한 실천계획을 관계부처등과 협의하여 인천시의 실천계획은 승인(2000.6.13) 하였으나, 서울시 및 경기도는 6월중 실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Ⅳ. 대기환경규제지역 관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후 2년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에는 ① 엄격한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②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실시 ③ 시·도지사의 조례로 자동차 중간검사제도 실시 ④ 기타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이외 지역적 특수성이 가미된 다양한 대기오염 개선대책등의 추진이 가능하며,

환경부에서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울·인천 및 경기도지역에 대하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1999년부터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등 4개 업종에 대하여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폐기물보관처리시설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도 2000년이후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